

제28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 
미래·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

강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 
**검 토 보 고 서**



2021. 8. 30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 
미 래 · 복 지 위 원 회

# 강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2021년 8월 30일  
전문위원 허 은 옥

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1 - 73
- 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1년 8월 17일
- 라. 회부일자: 2021년 8월 18일

## 2. 제안이유

강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공개 모집의 방식으로 해당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사업개요

#### ○ 시설개요

시설명	소재지	시설규모 (m <sup>2</sup> )	관리 급식소 수
강서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	강서로5길 20, 202호	105	160개소

○ 위탁사무내용

- 어린이 급식소의 현장순회 방문 지도를 통한 위생·안전 및 영양관리
- 안전한 급식관리를 위한 어린이 급식소 컨설팅 활동
- 어린이의 균형 잡힌 영양관리를 위한 식단 및 레시피 개발·보급
- 대상별(어린이, 조리원, 원장, 교사, 부모)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
- 위생·안전 및 영양관리의 정보제공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
-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○ 위탁기간: 5년(2022. 1. 1. ~ 2026. 12. 31.)

○ 수탁자 선정방식: 공개모집

○ 소요예산(2021년 기준): 525,000천원(국비30%, 시비35%, 구비 35%)

나. 추진일정

○ 2021년 9월: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및 접수

○ 2021년 10월: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및 위탁체결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

○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시행령 제12조의2

○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, 제10조, 부칙 제3조

## 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강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,
- 강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 설립되어 민간위탁으로 운영<sup>1)</sup>하고 있으며, 올해 말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체를 선정하려는 것임
- 검토결과,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는 「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」 시행령 제12조의2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) 및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등의 기준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,
- 다만, 위탁체 선정시 철저한 위생관리와 균형잡힌 식단으로 전문적인 영양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급식환경이 조성되도록 지도·감독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---

1) 강서구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위탁연혁(4P) 참조

※ 강서구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위탁 연혁

구 분	기 간	사업규모	위탁기관
최초	2011.4.26.~2012.12.31.	2011년 : 3억규모	숙명여자 대학교 산학협력단
2차	2013.1.1.~2015.12.31.	2012~2020년 : 4억규모 운영	
3차	2016.1.1.~2018.12.31.		
4차	2019.1.1.~2021.12.31.	2021년 : 5억규모	

**□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**

**제21조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·운영)**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(이하 “급식소”라 한다)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
  2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·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
  3. 「학교급식법」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
  4.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
-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(이하 “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”라 한다)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,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「학교급식법」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·운영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**□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시행령**

**제12조의2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)**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

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
  2. 「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」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
  3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,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,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
  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## □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**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**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여성·청소년·아동·가족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3. 보건·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
**제10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**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·기구·장비·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
2.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, 공신력
3.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
4.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
5.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

**부칙 제3조(승인 및 동의 절차의 특례)**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치 사무의 경우 제7조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